##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의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54 발의연월일: 2021. 1. 8.

발 의 자:유의동・김형동・윤두현

강대식 · 강민국 · 양금희

안병길 · 윤재옥 · 김성원

민형배 · 배진교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·자립·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은 「상법」상의 영리법인이나 「민법」상의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생활협동조 합의 성격,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,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 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,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들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, 판매를 수행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,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6조).
- 나. 조합 · 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함(안 제3조).
- 다. 조합·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, 친환경제품의 생산·유통의 활성화,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,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(안 제8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자주·자립·자치적인"을 "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·용역·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, 판매를 자주·자립·자치적으로 수행하는"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법인격과 주소) ① 조합·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.

② 조합·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성격)"을 "(기본원칙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제1호 중 "영리를"을 "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, 영리를"로 한다.

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조합등의 책무) ① 조합등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

-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·유통의 활성화,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,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(보건·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, 환경·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상부상조의	제1조(목적)
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	
의 <u>자주·자립·자치적인</u> 생활	<u>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</u>
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	품・용역・시설 등의 공동구매
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	와 이용, 판매를 자주·자립·
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	자치적으로 수행하는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주소) 조합・연합회와 전국	제3조(법인격과 주소) ① 조합・
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	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
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.	법인으로 한다.
	② 조합・연합회와 전국연합회
	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
	소의 소재지로 한다.
제6조(성격) <신 설>	제6조(기본원칙) ① 조합등은 그
	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
	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
	<u>한다.</u>
①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	<u>②</u>
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	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	

추어야 한다.

- 할 것
-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지역사회에 대한 기여) 조 제8조(조합등의 책무) ① 조합등 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1.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 조를 목적으로 하되, 영리를-

  - 2. (현행과 같음)
  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 발전과 환경·자연생태의 보전 여 교육·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.

- 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 산・유통의 활성화,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, 적정한 보건의 료 서비스의 공급(보건・의료 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, 환경·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